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경 제 자 유 구 역 의 지 정 및 운 영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1.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자체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확대(제5조의2 제4항)

- 1) 경제자유구역내 관광단지의 경우 면적·토지이용계획의 자체변경 가능 범위를 기존 단위지구개발면적의 10% 또는 10만㎡ 미만으로 제한 하였으나, 관광진흥법내 규정을 적용하여, 관광단지 면적의 30% 또는 시설계획면적의 20%까지 자체변경 가능토록 개선(제2호의 다목 신설)
- 2) 개발계획 변경시 지자체에서 1년까지 사업기간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을 2년으로 확대(제10호)
- 3) 개발계획 변경시 지자체에서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을 변경규모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제11호)

4)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위지구의 유치업종 추가는 경
자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하였으나, 산업부에서 별도로 고시
하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산업부고시)에 대해서는 지자
체에서 자체변경(조건부)이 가능하도록 개선(제14호 신설)

5)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유치업종 관련 제도개선(산
업단지 킬러규제혁파) 사항을 반영 (제15호~제17호 신설)

나. 개발계획 변경 관리 체계 확립(제5조 7항 신설)

1) 개발계획변경의 지자체 자체변경 가능 범위 확대됨에 따라 단위
지구별 지정목적에 맞게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 지자체 개발계획 자체 변경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체변경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조항
신설

다. 현행 법률에 맞춘 법령 현행화(제31조 제3항)

1) 시·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 법률 현행화(제6호, 제7
호 및 제28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사업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3조와 제47조에 따른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변경 및 관광단지면적이나 관광시설계획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단,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적용한다.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7조의 7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업종의 추가. 다만, 단위개발사업지구 기반시설용량이 10%이내로 변경 되고, 개발계획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 함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3항에 따른
입주업종 추가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입주업종 추가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업종 특
례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

⑦ 시·도지사는 동조 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에 해당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 고시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개발계획변경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제6호 중 “법 제7조의5제2항”을 “법 제7조의5제3항”으로 하
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7조의5제3항”을 “법 제7조의5제4항”으로 하
며,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28조의4제1항”을 “법 제28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③ (생략)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다.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와 제47조에 따른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변경 및 관광단지 면적이나 관광시설계획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단,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적용한다.</u>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u>1년</u> 의 기간 내에서의 연 장	10. ----- -- <u>2년</u> ----- --
11. 재원 조달방법 항목에 <u>적힌</u> <u>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u> <u>범위에서</u> 사업비의 증감	11. ----- <u>적힌</u> ----- -----
12. · 13. (생략)	12.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u> <u>영에 관한 특별법 7조의 7 제2</u> <u>항에 따라 고시된 업종의 추</u> <u>가. 다만, 단위개발사업지구</u> <u>기반시설용량이 10%이내로</u> <u>변경 되고, 개발계획면적 증가</u> <u>가 없는 경우에 한 함</u>
<신 설>	15.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u> <u>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3</u> <u>항에 따른 입주업종 추가</u>
<신 설>	16.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u> <u>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u> <u>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서</u> <u>심의된 입주업종 추가</u>
<신 설>	17.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u> <u>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u> <u>라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된</u> <u>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u>

<신 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개발투자지원팀	
연 락 처	(044) 203 - 4651